

# Samil Flash

##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

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을 포함하여 최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발표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(안) - 2009년 1월 공표 예정

일부 기업회계기준의 수정을 금융위원회(2008년 12월 26일)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, 2009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어 공표될 예정입니다. 그 과정에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-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도입 -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
- 기능통화제도 도입 - 기업회계기준 개정
-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- 해석 53-70 개정
- 공정가액 위험회계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- 해석 53-70 개정
- 중소기업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외화환산 특례 -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특례 개정
- 상장법인, 금융회사, 금융위원회등록법인이 아닌 기업: 주요위험요소가 외화인 장외파생상품평가 특례 - 기업회계기준 개정

### 기타 기업회계기준 개정 - 2008년 12월 공표

-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
-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
- 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
- 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
- 적용의견서 08-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발표

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([www.kasb.or.kr](http://www.kasb.or.kr))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

###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도입 -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 (안)

#### 주요 내용

-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
-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 등으로 결정.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임.(금융감독원에서 실무의견서 2009년1월 중 발표 예정)
- 공정가액 평가로 유형자산 장부금액 증가시: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.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 해당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
- 공정가액 평가로 유형자산 장부금액 감소시: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.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잔액이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
-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
- 재평가모형 적용시 재평가기준일, 독립적 평가인 평가 참여여부, 원가법모형 적용시의 장부가액, 재평가적립금의 변동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 내용은 시행일(2008.12.31)부터 적용.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예정임.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.

### 기능통화제도 도입 - 기업회계기준 개정 (안)

#### 주요 내용

- 기업회계기준 69조의 2 (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및 표시통화로의 환산) 신설
-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임.
-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경우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의 환율, 손익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나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 평균환율 적용할 수 있음.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 내용은 시행일(2010.12.31)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. 2008.12.31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 허용 예정

##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

###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- 해석 53-70 개정 (안)

#### 주요 내용

-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
- 위험회피 전략의 문서화, 높은 위험회피 효과 등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위한 요건 및 회계처리 방법은 기존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와 동일함.

#### <사례>

- 외화차입금을 예상 매출거래에 대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하여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
- 예상 매출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매출은 위험회피 회계 지정시의 환율로 계상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 내용은 시행일(2008.12.31)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.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예정
-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2008. 7. 1~ 2008. 12. 31의 기간('특례 기간') 중 특정 일자로 소급하여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고 문서화할 수 있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소급하여 지정 및 문서화할 수 없음. 다만, 특례 기간 중의 지정 및 문서화는 2009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.

### 공정가액 위험회계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- 해석 53-70 개정 (안)

#### 주요 내용

- 개정 전: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이 중도 청산되어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확정계약 자산 부채를 일시 당기손익에 반영
- 개정 내용: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 내용은 시행일(2008.12.31)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.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예정.

##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

### 중소기업특례 외화환산 추가 - 기준서 14호 중소기업 특례 개정 (안)

#### 적용 대상

-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특례 대상 기업
- 상장법인, 금융위 등록법인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. 다만,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대상에서 제외

#### 주요 내용

-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회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2008년 6월 30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음.
-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또는 부담한 부채는 제외
-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.
- 외화환산에 대한 특례 선택 여부, 환율 적용시점 이후의 환율 변동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

### 상장법인, 금융회사, 금융위원회등록법인이 아닌 기업: 주된 위험요소가 외화위험인 장외 파생상품평가 특례 - 기업회계기준 개정 - 기업회계기준 개정 (안)

#### 적용 대상

- 상장법인,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(중소기업특례 대상 기업 제외)

#### 주요 내용

-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주된 위험요소가 외화위험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.
- 이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
- 개정 내용은 시행일(2008.12.31)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.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.

##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

###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- 2008.12.29 공표

#### 주요 내용

- 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음.
- 만기보유증권의 분류제한 규정 수정: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이나 매도가능으로의 분류 변경 등의 경우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적용 시 해당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추가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 내용은 시행일(2008.7.1) 부터 적용함.
-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분류변경일을 시행일(2008.7.1)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의 날로 정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, 2009년 1월 1일부터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.
- 다만,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분류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 결정할 수 있음.

###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- 2008.12.29 공표

#### 주요 내용

- 개정 전: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특례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내용 : 문단 22의2를 신설하여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정보를 공시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문단 4(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)를 소급적용할 수 있음.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내용은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음. 다만, 기준서 제1호 “회계변경과 오류수정”에 따라 회계처리하며, 파생상품평가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

## 2008년말 기업회계기준 개정 요약

### 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| 개정 - 2008.12.29 공표

#### 주요 내용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,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 정보로서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권장
- 금감원에서 발표한 실무의견서 [2008-1] 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’에 대한 기준서상의 근거 마련

#### 적용 시기

- 개정된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, 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### 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- 2008.12.29 공표

#### 주요 내용

- 부(-)의 자본잉여금 처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와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의 관련문구를 개정
- 종속회사 주식 추가 취득 등으로 연결자본잉여금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(종속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함)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

#### 적용 시기

- 2008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 가능

### 적용의견서 08-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- 2008.12.17 발표

#### 주요 내용

- 공정가치란 무엇인가,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은 언제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가, 가치평가기법을 이용 시 고려사항, 공시사항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
- 시장의 거래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거래활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신력 있는 시장의 가격도 공정가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.

#### 적용 시기

- 2008년 12월 17일에 시행되며,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[www.samil.com](http://www.samil.com)